

수산업의 미래

— 新 어항개발 방향과 관련하여

남 광 훈 한국어촌어항협회 어항본부 어항개발팀장

우리나라는 2012년 현재 970개의 법정어항(국가어항 109개항, 지방어항 285개항, 어촌정주어항 576개항)이 지정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 8조 5,849억원중 2012년까지 5조 2,993억원을 투자하여 약 42.8%의 완공율을 보이고 있다.

과거 어항은 어선의 안전정박 및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주 기능으로 하여 수산업 기반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추어 어항을 개발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어항개발에 대한 여건변화를 살펴보면 주변국의 수산자원 관리 강화와 수산물 시장의 개방, 타 산업에 비해 저조한 소득으로 인한 탈 어촌 현상 가속화,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 등으로 인한 해양성 휴양·관광욕구 증가, 환경친화적인 어항개발 및 자원조성과 연계한 어항개발 요구 집중,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수산여건 변화와 태·폭풍에 의한 자연 재해 가능성의 증대 등이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어항의 기능도 과거 수산물 생산·유통의 단순 기능에서 벗어나 가공·문화·관광·상업 등 복합기능을 겸비하며, 어촌 지역사회의 기반 및 도시민에게 휴식·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어항개발 방향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정부는 기존 기반시설 위주의 개발을 탈피하고자 2005년부터 어항기능 활성화를 위해 13개 다기능어항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거의 완공단계에 있으나, 주변 사업과의 연계 부족과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계획과 연계한 어항기능 고도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어항개발은 보다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어항에 대한 정비사업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어항의 이용성 증대에 중점을 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새로운 어항개발 방향으로 아래의 몇 가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지자체의 지역 개발계획과 연계된 어항 특화개발을 통한 창조경제 기여

정부에서는 기존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어항을 중심으로 어촌·어장 및 어항 배후지

역과 연계된 어촌지역의 종합개발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어항 4개소를 선정하여 지자체의 개발계획과 연계된 어항기능 고도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어진항 연계개발 계획(안)



구시포항 연계개발 계획(안)

이와 더불어 어항 개발은 어항의 기능 및 잠재적 가치를 감안한 특화개발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한·EU FTA 체결 등으로 수산물의 위생관리 국제규제 강화, 소득 증가 등으로 위생·안전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으나, 국내 어항의 수산물 유통·판매·보관 및 처리·가공 시설 등의 위생안전 및 품질 유지 설비 등에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항의 위생 및 환경개선을 위한 수산물 원스톱 종합 처리시스템 (FPC, 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Complex, 수산물 종합처리장)을 구축하고, 어항의 위생관리기준(하드, 소프트)을 마련하여 어항의 위생 및 환경개선을 위한 위생관리형 어항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위생관리형 어항

또한 항내 수역이 충분하고 자원조성 여건이 좋은 어항의 경우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생산·관리 기능을 갖는 자원관리형 어항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양식업의 경우 해상 가두리 양식이 전체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형적 여건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 2003년 태풍 매미 내습시 약 6,000여억원의 어업피해로 인해 수산물 수급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태·폭풍 내습시 양식어장은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항수역의 확장 및 양식장 보호시설(부유 방파제

등) 조성을 통해 태·폭풍 내습시 어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어항개발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자연환경 등 관광여건이 좋은 어항은 호텔, 바다낚시터, 마리나, 인공해수욕장 등 관광·레저·휴양시설을 조성하여 관광형 어항으로 정비해 나가는 등 각 어항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대포항 개발계획 조감도



강릉항 마리나 시설



관광형 어항개발 사례(일본)



이러한 개발과 더불어 어항이 가지는 고유성을 특화시켜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고 이를 어촌에 접목함으로써 어항과 어촌을 동시에 마케팅할 수 있는 “어항의 브랜드화”를 통해 어촌·어항의 경쟁력 제고, 어촌지역의 소득향상 등 어항개발에 대한 시너지 효과 창출뿐 아니라 새 정부의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안전·재해 관리 강화를 위한 어항시설 정비사업 추진

최근 IPCC 보고서(2007)에 의하면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기온은 0.74℃ 상승하였으며 21세기 말 6.4℃ 추가 상승하며, 이로 인해 해수면도 59cm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2005년 심해설계과 재산정 결과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1~3m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에서는 지난 3년간 82개 국가어항의 외곽시설의 파랑 변화에 따른 안전성 검토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59개항에 대해 약 9,815억원의 보수·보강 공사비가 필요한 것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단계적으로 대상항의 외곽시설(방파제 등)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어항내 태·폭풍 내습 현황



태·폭풍으로 인한 어항시설 피해현황

셋째, 어항 노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보강 시스템 구축

1970년대부터 어항법에 의한 어항개발이 추진되어 오면서 2012년말 현재 내구연수가 20년 이상 경과된 국가어항 시설물이 164개로 전체 시설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후 시설물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노후 시설에 대한 관리 중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노후 어항시설의 재정비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여야 한다.



경과년도	30년 이상	20~30년	10~20년	10년 이내	합계
시설물수	57개소	97개소	281개소	323개소	758개소



노후화로 인한 어항시설 손괴 사례

넷째, 어항 수역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일부 국가어항의 경우 퇴적량은 1개항당 약 5천m³/년으로 매년 심각하게 매몰이 진행되어 어항 이용성 저하, 조망권 훼손, 어선 전복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어항 수역내 매몰 모니터링 및 상시 소규모 유지준설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준설토사의 효율적인 처리 및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설토 광역투기장 조성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매몰로 인한 항 폐쇄
장봉항(인천)방파제 내측 매몰
수산항(강원)항입구부 매몰
사천진항(강원)물양장 전면 매몰
원평항(전남)

다섯째, 어항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전국 어항(970개 법정어항)의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 관련 정보를 개방·공유·활용하여 어항의 사회·경제적 수요 및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개발 지원 및 어항의 기능과 이용 활성화는 물론 선제적인 재해예방 및 사후 관리체계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여섯째, 어항내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스템 구축

최근 어항은 수산물의 가공·유통·판매·소비 및 관광기능의 활성화로 기존 어항시설에 비해 전력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재난으로 인한 정전 발생시 어패류 집단 폐사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어항내 풍력 또는 태양광 발전 등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스템을 도입하여 어항시설 및 주변 수산시설에 대한 자체 전력 공급과 잉여 전력의 판매로 환경친화형 어항 개발과 어항 관리재원으로 활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어항내 자연에너지(태양광, 풍력) 발전시설 도입 사례(일본)

일곱째, 어항부지 이용구조 개선을 통한 관리경비 확보

현재 어항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어항시설의 유지·관리, 환경정화, 안전 및 이용질서 유지등을 위해 어항시설 점·사용료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관리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어촌어항법 제42조 및 영 제39조)되어 있으나, 어항부지중 대부분(61%)를 수협·어촌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어항관리 경비 충당을 위한 점·사용료 수입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항시설을 이용하여 수익하는 단체의 경우 손괴·변형·노후화 등 어항시설의 훼손 및 환경보전 등에 대한 부용부담 원칙에 따라 무상사용 대상시설을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로 한정하고, '97년 수산물 의무상장제가 폐지되어 수익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수산물 위판장 등은 점·사용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어항부지의 이용구조 개선을 통한 어항시설 점·사용료 수입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수협 가공시설 관리소홀
미조항(경남)



페어구 방치
대진항(강원)



간이판매장 무단 점유
다대포항(부산)



어구 건조·야적(물양장부지)
안흥항(충남)

앞으로도 어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받게 될 것이고, 항상 이 요구에 맞춰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기서 제언하는 발전방안은 하나의 예가 될 것으로 보이며, 어항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